



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금지〉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37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금지	2

I. 개요

1.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3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26.

(3) 회 부 일 : 2025. 3.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유통·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 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 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금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생략)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신고하여야 한다</u> .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u>신고하여야 하며</u> <u>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u> ----- ----- ----- ----- -----.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조제2항¹⁾에서는 제4조제1항제3호²⁾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³⁾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 제6조제2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대상 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 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2015. 2. 3.>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2015. 2. 3.>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이라 한다)의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012. 8. 1.>

2. ~ 8. (생략)

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하는데, 캡슐, 정제 형태로 되어 있어 개인의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되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등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6조제2항에서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44조제1호4)에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회적인 개인 간 거래까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지 현행법 제6조제2항 위반으로 제44조제1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해왔음.

□ 그런데,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5)에 따른 국무조정실장 소속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규제심판부)가 대법원 판례⁶⁾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법을 근거로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대규모 영업을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음.⁷⁾

5)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2.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규제혁신추진단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3.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관한 규제개선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개선과제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2조(명칭)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명칭은 ‘규제심판부’로 한다.

6) 대법원 1994.4.29. 선고 93다54842 판결[대여금]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7) 참고로, 규제심판제도는 2022년 8월 최초로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서,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민간 중심 규제개혁 제도임.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세부 내용 >

-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 (허용 기준)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 (관리 방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4.1.16.)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가이드라인⁸⁾을 준수할 수 있는 플랫폼 2개사(당근마켓, 번개장터)에 한하여 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당근마켓에 대해서는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운영 중임.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내용 >

- (참여 사업자) 중고거래 플랫폼 2개사(당근마켓, 번개장터)
- (대상 제품) ① 표시 확인 가능, ② 최소판매단위로 포장, ③ 소비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잔존, ④ 실온 또는 상온 유통 가능 제품
- (허용 기준) 개인별 총 10회 이내, 총 누적 30만원 이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고로,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총 거래 건수는 10만 6,000여 건으로, 거래금액은 약 33억원에 달하며, 게시 건수 대비 규정 위반 적발 건수는 4.4%인 13,153건으로 나타남.

8) 가이드라인: ① 전용카테고리 구축, ② 기준 위반자 필터링, ③ 소비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잔존, ④ 실온 또는 상온 유통 가능 제품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거래 현황('24. 5~'25. 5)>

구 분	게시 건수	거래 건수	판매자 수	총 판매액 (만원)	규정위반 적발 건수*
당근마켓	289,755	103,446	91,898	314,542	8,582
번개장터	10,367	2,522	1,857	15,516	4,571
합 계	300,122	105,968	93,755	330,058	13,15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편, 국무조정실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 권고에 앞서, 2023년 8월 규제심판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 주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당시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찬반 논거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유통기한 준수 등 국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해당 범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걸 막는다는 게 소비자의 권리 침해 아닌가” 등의 찬성 의견과

“요즘 의약품처럼 파는 건강기능식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고거래까지 허용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다”, “유통질서 문란과 위생, 건강 위해 문제 등으로 재판매에 반대한다” 등의 반대 의견이 엇갈렸음.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 찬반 논거 >

선물받았으나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민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간 재판매 금지는 유지되어야 함
· 현행법이 정한 판매업 신고제는 건강기능식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유통시키는 판매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1회적인 개인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을 집약·농축한 제품으로서 올바른 섭취를 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
·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판매(약 63%) 및 개인 간 선물이 일상화되어 있고, 의약품과는 달리 복약지도도 필요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할 이유가 없음	· 건강기능식품은 캡슐, 정제 형태로 되어 있어 개인이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될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담보가 어려움
· 건강기능식품은 정부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으로 섭취시 주의사항만 따르면 안전한 섭취 가능	· 개인이 경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었음.
·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상온에서 저장·유통이 가능하여 개인 간 거래 시에도 변질 가능성은 낮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를 통한 소비자 구제 가능	·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등 중고거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유통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식품 거래시에도 소비기한 확인이 관행화되어 있는 등 개인 간 거래를 자율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 인식이 높은 수준임	·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일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여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에서만 중고거래를 허용할 경우 특혜시비 등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일반 온라인 플랫폼까지 허용할 경우 판매횟수 제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유통 확산 가능
· 거짓·과장 광고 문제는 제품의 판매 증대를 원하는 일부 영업자들의 문제로 일반 개인이 시장을 혼란시킬 우려는 없음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무신고 영업자의 시장 교란 행위는 판매횟수 제한 등 기술적으로 차단 가능함	

자료: 규제심판 홈페이지

□ 따라서, 이러한 찬반 의견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금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해외 주요국 사례 >

구 분	미국	일본	EU	한국
제조업 인허가	등록제	허가제	신고제 (국가별로 상이)	허가제
판매업 인허가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신고제
개인간 재판매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4.1.16.)

□ **둘째**,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 제6조제2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로 개정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재일 뿐,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법률로서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물품은 의약품, 마약, 담배, 모의총포 등이 있는데, 「약사법」을 예로 들어보면, 제20조(약국 개설등록)와는 별도로 제44조(의약품 판매)제1항에서 약국 개

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제93조제7호에서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⁹⁾함으로써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물품 및 관련 법률 〉

구분	관련 법률
의약품	▶ 「약사법」 제44조제1항: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마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벌칙)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담배	▶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벌칙)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의총포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9)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판매 확립을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함. 다만, 개인 간 거래 전면 금지는 건강기능식품의 특성, 유사 입법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결과,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의 종료 시점이 5월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개정안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것임.

□ 대한약사회: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현황

1 개념 및 특징

- (개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① 기능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
 ② 원료·성분: △고시형 97개(철분 등 영양성분 28개, 홍삼 등 기능성 원료 69개)
 △개별인정형 330개(크릴오일, 강황추출물 등)

- (일반 식품과의 차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가 가능

* (예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 (의약품과의 차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시***가 의무

* (예시)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2 관련 통계

□ 시장 규모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규모(원)	3조 3,254억	4조 321억	6조 1,498억	6조 1,415억	6조 440억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2021	2022	2023	2024
제조업	521	539	566	591	607
판매업	91,489	103,420	126,327	126,804	117,259
일반	87,688	98,951	121,223	121,174	111,233
유통전문	3,801	4,469	5,104	5,630	6,026

□ 주요 유통채널별 판매금액 비중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0	2021	2022	2023	2024
인터넷몰	56.9	63.6	64.5	68.9	69.8
대형할인점	7.8	6.9	6.0	5.7	5.5
방문판매	5.8	4.4	4.5	2.5	2.4